



보도	2023. 2. 15. (수) 조간	배포	2023. 2. 14. (화)		
담당부서	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	책임자	국 장	안승근	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	이윤길	(02-3145-8482)

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한 TF 운영 및 향후 추진방향

1 증권성 판단지원 TF 운영

□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가상자산을 발행·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,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□ 금융당국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 사례*를 제시하고

○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**를 안내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* '22.4 뮤직카우 및 '22.11 한우·미술품 조각투자

** '22.4 「조각투자 가이드라인」 및 '23.2 「토큰 증권 가이드라인」

□ 이에 더하여, 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「원내 TF」*를 구성(2.10.)하였습니다.

* 기업공시국(총괄), 공시심사실, 디지털금융혁신국, 자금세탁방지실, 자본시장감독국, 금융투자검사국, 법무실 등

○ 동 TF는 ①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, ②업계 질의사항 검토, ③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, ④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.

- 또한 이와 별도로 학계·연구원, 유관기관, 증권업계, 법조계 등을 포함한 「외부전문가 TF」를 구성하여,
 -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.

2 향후 추진방향

-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,
 -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제출받아,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,
 -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「토큰 증권 가이드라인」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,
 -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※ 추진일정(안)

구분	과제	일정(안)
증권성 판단 TF 구성	원내 TF 구성	2.10.(금)
	외부전문가 TF 구성	2월중
증권성 판단 지원	질의사항 입수	2.10.(금) ~
	업계(가상자산거래소 및 DAXA) 간담회 개최	2월중
	설명회 개최 및 체크리스트 제공	2월말
	사례별 증권성 검토	3월 ~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